

대전지방법원 2022. 8. 23 선고 2021가단12565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생

담당변호사 김준한, 김민희

변 론 종 결 2022. 6. 21.

판 결 선 고 2022. 8. 23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9,213,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4. 1.부터 2022. 8. 2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2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9,017,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4. 1.부터 이 사건 소장(지급명령)

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3. 3. 15.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C공사 중 광선로감시시스템 및 광케이블감시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납품 부분을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다.

나. 원고는 2013. 12. 20. 피고와 사이에, 위 광케이블감시시스템의 신규서버 개발·납품 및 기존 E 1, 2차 사업 광케이블감시시스템 감시장치(이하 'RFTS'라 한다)와의 연동 업무를 대금 2억 8,000만 원(부가가치세 별도)에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(이하 '이 사건 납품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원고는 피고에게 2014. 1. 15.부터 2014. 12. 31.까지 7회에 걸쳐 이 사건 납품계약의 대금 합계 2억 8,000만 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기존 1, 2차 사업의 RFTS 26대에 대한 시험 결과 1차 사업 중에는 F역 등 7개소, 2차 사업 중에는 G 등 2개소 합계 9대의 RFTS가 고장난 사실이 확인되었고, 피고는 고장난 9대를 제외한 나머지 17대의 연동작업을 마쳤다.

마.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. 3. 31. C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.[인정 근거] 다툴 없는 사실, 갑 제3, 4, 5호증,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원고 주장의 요지

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정한 RFTS 26대 중 17대만 연동하고 9대는 연동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품대금 2억 8,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, RFTS 9대의 연동비에 해당하는 49,017,314원을 부당이득하고 있다.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위 49,017,314원 및 이에 대하여 준공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.

### 3. 판단

가. 민법 제538조에 의하면,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(제1항 본문), 이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(제2항).

나.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납품계약 제10조(특약사항) 제5항은 ‘철도공단에 납품하는 RFTS 신규 시스템과 기 납품된 타 시스템간의 연동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,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연동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’고 정하였고, 그 기준 중의 하나로 ‘1) 철도공단 현장실사에서 RFTS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’을 규정하고 있다.

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정한 RFTS 26대 중 9대가 고장 나 연동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위 납품계약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의 RFTS 9대에 대한 연동의무는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.

다. 피고는 고장난 RFTS 9대에 대한 연동의무의 이행을 면하고도 납품대금 2억 8,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,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위 채무를 면함으로써 지출할 필요가 없어져 절약된 비용인 RFTS 9대의 연동비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.

갑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RFTS 26대의 연동에 관한 재개발 원가가 113,284,459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, 피고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39,213,851원(= 113,284,459원 × 9/26대, 원 미만 버림)이라고 봄이 상당하다(원고는 위 재개발 원가 113,284,459원에 이윤 28,321,115원을 더한 재개발 사업대가 141,605,574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위 이윤 부분은 피고가 연동의무를 면함으로써 지출할 필요가 없어져 절약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).

라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39,213,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4.

1.부터(한국철도시설공사가 C공사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준공검사를 마친 2015. 3.

31.경에는 피고가 고장난 RFTS 9대의 연동의무가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, 그 무렵부터 피고는 위 9대의 연동비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안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)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

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8. 2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**4. 결론**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민하